##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96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 장종태·김선민·김남희

이수진 · 김 윤 · 오세희

강준현 • 박희승 • 문진석

복기왕 · 조승래 · 이원택

소병훈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,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·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,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·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, 제10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의"를 "보건복지부장관의"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교육부장관이"를 "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부장관이"를 "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이"를 "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"보조"를 "보조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·관리"로 한다.

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에게"를 "보건복지부장관에게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에게"를 "보건복지부장관에게"로 한다.

제23조 중 "교육부장관은"을 "보건복지부장관은"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이"를 "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2		
때에는 <u>교육부장관의</u>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의</u>		
받아야 한다.	,		
제10조(임원) ① (생 략)	제10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	2		
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			
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			
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			
천을 받아 <u>교육부장관이</u> 임명	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		
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			
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			
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			
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			
상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	③		
아 <u>교육부장관이</u> 임명한다.	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	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
제14조(대학병원장) ①・② (생	제14조(대학병원장) ①·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	3		
아 <u>교육부장관이</u> 임명한다.	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	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		

- 제19조(출연 또는 <u>보조</u>) ①  $\cdot$  ② 제19조(출연 또는 <u>보조 등</u>) ①  $\cdot$ (생 략)
  -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·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 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 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  - 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  - (5) (생략)
- 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원 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--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 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22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원 제22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---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|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 • 관리-----
  - ⑤ (현행과 같음) 복지부장관에게-----

·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
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
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② (생 략)

제23조(감독) 교육부장관은 대학 병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#### 제25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<u>보건복지부</u>
<u> 장관에게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감독) <u>보건복지부장관은</u>
제2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2
보건복지부장관이